

현재 상황

□ 발생 신고 및 검사 사항

(4월 25일 09:00 현재)

○ 총 신고 사항 : 70건(양성 15건, 음성 55건)

- 4월 16일 이후 추가발생 없음

□ 발생지역 살처분 및 예방접종 실적(4월 20일 현재)

지역	실적		예방접종 실적	
	농가수	두수	농가수	두수
경기 파주	7	106	696	97,539
경기 화성	1	30	1,142	82,802
경기 용인	2	81	699	60,344
충남 보령	1	55	2,103	19,692
충남 홍성	154	1,820	4,532	298,253
충북 충주	16	131	1,744	57,235
계	181	2,223	10,916	615,865

□ 이동제한 지역내 수매실적(4월 24일 현재)

- 소 2,059두, 돼지 65,254두

구제역 방역 추진 상황 및 대책

□ 방역대책

- 발생농장 및 미감염된 같은 마을(반경 3km이내) 가축에 대한 살처분 실시
- 발생농장 반경 10km이내 가축에 대한 예방접종 실시
- 발생농장 반경 20km이내 가축 및 차량 등에 대한 임상·혈청검사를 통해 질병확산여부 확인 및 이동제한
- 예방접종의 단계적 전국 확대실시
 - 서해안지역부터 우선적으로 1차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전국적인 예방접종 준비
-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구제역특별위원회설치」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역학조사반을 「역학조사

위원회」로 확대 개편

□ 축산농가 주의사항

- 구제역 발생지역 방문 금지 및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물품(차량, 기구 등)을 철저히 소독
- 농장 방문객이나 상시 출입자에 대한 충분한 소독
- 가축에서 수포성질병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가축방역기관에 신고
- 발생지역·오염·경계지역의 농장을 방문하고 돌아온 사람은 2주이상 농장방문을 금지하고 축산농가는 이러한 사람의 농장출입을 금지
- 쥐 등 야생동물과 파리 등 매개곤충을 구제하고 축사 내 외부를 정기적으로 소독

※ 소독약품: 가성소다, 탄산소다, 복합산용액
(팜플루이드 등), 생석회 등

- 가축의 투매나 홍수출하의 자제
- 중국 등 구제역 발생 국가 여행 차제
- 발생지역 · 오염지역 · 경계지역에서 불법 반출한 소, 돼지, 양, 사슴의 구입금지 및 이러한 가축을 판매 · 운송해주는 업자는 가까운 경찰서나 가축방역기관에 신고

편성)

□ 발생지역 반경 20km이내 이동제한지역 내 소 수매 가격 발표

- 가축이동을 제한받고 있는 지역의 농가가 희망할 경우 소를 수매하겠다고 4. 6일 발표함
- 소 수매 가격은 축협중앙회가 조사한 전국 평균 가격을 적용함
 - 한우 수소(500kg) 2,444천원
 - 한우 암소(500kg) 2,663천원
 - 젖소 초산우(두당) 2,031천원
 - 젖소 다산우(두당) 1,105천원
 - 젖소 노산우(두당) 704천원
 - 육우(kg당) 3,198원
- ※ 협회에서 소 수매가격적용기준을 전국평균가격이 아닌, 축협조사가격 중 도별 가격으로 적용해줄 것을 건의함(4월 7일 구제역 관련 긴급대책건의(5))

□ 살처분 보상가 방안 발표(4. 9)

- 지급대상: 수의과학검역원의 구제역 혈청검사 결과에 의거 시 · 도지사가 살처분을 실시한 우제류 동물
- 지급요율: “구제역 살처분가축 보상평가 위원회”에서 축종별, 품종별로 제시한 금액의 100%
- 보상금 평가액의 상한선
 - 위원회는 평가 당시 살처분 한 가축이 사육된 지역(시 · 군 · 구)안에서 최근에 거래된 가격을 조사하여 상한 가격을 결정
- 종축, 젖소 고능력우, 맷돼지, 사슴, 염소 등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거나 시장가격의 등락폭이 커 조사가 어려운 가축의 평가액 상한선은 다음의 상황을 기준하여 적용함
 - 종축

□ 전국가축시장 폐쇄 조치

- 다른 지역으로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8조에 의거 시 · 도지사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전국 가축시장(133개) 폐쇄조치를 4. 4일부터 4. 30일까지 잠정적으로 발동해 줄 것을 시도지사에 지시
- 가축시장폐쇄에 따른 유통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축시장 운영자인 축협에 출하신청을 받아 매입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등으로 가축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요청
- ※ 협회에서 우시장 폐쇄할 경우 농 · 축협을 통한 계통출하가 이루어지도록 건의함(4월 4일 구제역 관련 긴급대책건의(3))

□ 수의사 총 동원령 조치

- 경기, 충남도는 이동제한 지역내 가축의 일제 예방접종을 위하여 즉시 동원 명령을 내림(4. 6)
- 동원 기간은 시 · 도지사가 예방접종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
- 기타 시 · 도는 발생상황, 방역추진 계획 및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수의사 동원여부 결정
- 동원대상은 공 · 개업 수의사 및 생산자단체 등 의 소속 수의사
- 시 · 도지사는 수의사 부족시 관내 수의과대학과 협조하여 수의과 대학생으로 구성된 방역활동반 운영(공무원, 민간수의사 등과 합동으로

- 종축의 인정 : 종축개량기관에 등록된 종축 또는 종축관련 생산자단체가 제시한 자료에 의거 위원회가 인정하는 것
 - 종축의 가격 : 한국종축개량협회 등 종축관련 생산자단체에서 제시한 금액 또는 당해 종축 구입시 거래한 영수증 등에 기재된 가격
 - 젖소 고능력우
 - 고능력우 인정 : 전국 연평균 두당 산유량 6,135kg에 비해 12%이상을 초과하여 산유하는 젖소
 - 평균산유량 확인 : 평가대상 젖소 사육농장에서 원유를 집유한 유업체가 최근 1개월간 지급한 원유대금의 평균
 - 고능력우 가격 : 일반 젖소가격(축협조사월보) + (평균산유량 초과 수입금 × 이용잔여 년수)
 - 구제역 살처분가축 보상평가 위원회 : 위원장 포함 7명
 - 위원장 : 살처분 농장 관할 시·군·구 축산담당 과장
 - 위원 : 가축방역기관의 5급상당 공무원 1인, 지역(업종)조합의 근무자 중 가축거래 업무 경험자 1명, 수의사 1명, 축종별 농가 대표 1명, 해당 축종의 생산자 단체 시·군·지부 직원 2명
 - * 협회에서 살처분 보상기준 마련회의에 농가 현실이 반영되도록 농가대표를 참여시켜 출결과 보상가 산정시 축협조사 가격중 도별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비유능력을 가산하여 출결을 건의함(4월 7일 구제역관련 긴급대책건의(5))
-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지급 지침을 준용 하여 보상토록 조치(4. 16)**
- “구제역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지침(4. 9)”을 준용하여 객관적 평가에 의한 현지 시가를 평가하여 보상되도록 함

- 고능력우의 경우 가격에 예시된 “평균 산유량 초과 수입금”은 단순 유대가격인 아닌 “순수익금”으로 계산하는 등 재입식 기간을 고려한 객관적 가격 평가를 실시하여 적정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함

□ 예방접종한 가축을 살처분·강제도축 하지 않는다고 밝힘(4.12)

- 예방접종가축의 사후관리문제는 구제역이 타지역으로 확산되지 않고 현상태에서 진정되느냐 여부와 돼지고기 수출 등을 위한 조기 청정화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것이나, 정부에서는 농가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살처분”이나 “강제도축”은 없다고 밝힘
- 구제역 예방백신은 사독예방약이기 때문에 부르세라예방약(생독)과 달리 부작용이 없다고 밝힘
- * 협회에서는 백신접종 가축의 향후 처리방침과 백신의 유해여부, 보상대책, 지도·홍보 및 안내문 제작·배포 등을 촉구함(구제역 관련 긴급건의 6차(4. 8), 7차(4. 9), 9차(4. 12))

□ 구제역 제2단계 방역작전 돌입(4월 15일 ~현재)

-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와 인접 마을을 다른 지역과 격리시키는 1단계 차단방역에 이어 서해안 지역에서 전국 확산을 막기 위한 2단계 소독방역을 추진함
- 제2단계 소독방역은 서해안을 중심으로 강력히 실시하되, 전국적인 초동방역 소독은 계속 추진
- 전국적으로 4월 16일 현재 총 15건 중 홍성 2개면 10건이 발생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하여

이의 원인을 특별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가축 전염병예방법의 규정대로 조기에 강도 높은 후속조치를 검토하고 있음

□ 이동제한 지역내 혈청검사 및 예방접종의 단계적 전국 확대 실시 준비

- 서해안지역부터 우선적으로 1차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여 전국적인 예방접종 준비(1두당 3차 접종이 완료되어야 완전 면역됨)
- 영국 퍼브라이트연구소에 위탁 보관중인 예방약 190만두 긴급수송(4.6일 75만두분 도착, 4.9일 75만두분과 4월말 40만두분 도착예정)하고 4월말까지 300만두분도 도입, 추가로 500만두분 구매 교섭중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청약기간 연장 (4. 15)

- 구제역 방역업무로 인해 시·군·농·축협의 정상적 업무추진이 곤란해짐에 따라 청약기간을 4월말에서 5월말까지 연장

□ 집회·행사 등 자제촉구

- 농림부에서는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구제역 발생지역 20km이내의 집회·행사 등을 자체하도록 촉구함

□ 구제역 초동방역에 헛점 들어낸 지자체장에게 경고조치

- 농림부 구제역 실무대책위원장은 지난 4월 10일 충북 충주시 신니면 마수리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초동 방역시 신속한 이동통제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충북 충주시장에게 그 책임을 물어 경고조치함(4. 12)
- 구제역 초동방역을 소홀히 한 홍성군수에게 경

고조치(4. 17)

□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무기한 집중단속(4. 12)

- 농림부는 최근 구제역 발생으로 축산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수입축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부정유통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사법 경찰관 292명을 포함해 지역별 단속반 390개반을 편성,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자를 무기한 집중 단속하기로 함

□ 예방접종 미실시 가축에 대한 수매제한 등 조치(4. 17)

- 원활한 예방접종을 위해 예방접종 미실시 가축은 수매대상에서 제외하고, 비협조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치

□ 구제역특별대책 지원을 위한 예산 국무회의 의결(4. 18)

- 축산발전기금 : 4,379억원, 국고예비비 : 388억원

□ 이동제한지역 명령위반 농가 등 신고포상금 지급

- 신고대상 : 이동제한 위반농가와 위반행위에 협조한 가축운송업자 또는 도축업 영업자
- 신고포상금 : 건당 20만원
- 위반자처분 : 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한 농가·가축운송업자·도축업영업자는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 국내발생 구제역, 돼지에도 감염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됨

- 한국에서 발견된 O1타입 바이러스가 돼지에도

감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페브라이트연구소가 4월 22일 수의과학검역원에 통보해옴

□ 구제역 발생지역 농가에 대한 긴급 경영 자금 지원

- 이동이 통제되고 있는 지역의 한우우 및 돼지사육 농가에 대해 421억원 지원
 - 한우농가 281억원, 양돈농가 140억원(기 지원 키로 한 흥성지역 양돈농가분 80억원 미포함)
- 지원내용 : 한우우농가의 경우 500kg이상 수소에 대해 수매가격인 2,444천원이내의 범위에서 지원
- 지원조건 : 연리 5%, 대출후 7개월부터 12개월 사이에 자율적 분할상환 실시(1년후 일시상환도 가능)

□ 이동제한지역내 거세우 수매가격 차등적용 지침 변경

- 고급육 생산장려를 위해 수매가격 차등적용(3,005천원/500kg기준)

□ 이동제한지역내 한우 수매지침 변경

- 농가경영난 완화를 위해 선급금 70%, 나머지 수매시 정산하는 선급금수매방식으로 변경(긴급경영자금을 지원받은 농가는 제외)

□ 구제역 발생지역의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의 단계적 해제

- 경계지역(질병발생농가 반경 10~20km) : 최종 발생지역 우제류 동물 살처분 완료일부터 21일 경과후 혈청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될 경우 해제
 - 단, 이동제한 기간동안 해당 시군이 취한 임상·혈청검사, 예방접종, 이동통제 등 이행내용이 평가·분석되어야 함

- 파주경계지역 이동제한 해제(4월 19일부터 이동통제 등 모든 규제사항 전면해제)

- 보호지역(질병발생농가 반경 10km 이내) : 예방접종을 실시한 점을 고려, 예방접종 완료일부터 30일 경과후 혈청(항원)검사결과 음성으로 판정될 경우 해제

- 다만, 예방접종 가축은 해제이후에도 『특별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사후관리

-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보호지역내 가축에 대한 임상검사 및 모니터링 혈청검사 지속 실시(보호지역내 1차접종은 강제실시, 2차접종은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의거 우제류 가축 모두 실시)

○ 발생지역(살처분농장)

- 해제일자 : 보호지역 해제일과 같음
- 해제기한이 도래되기 이전이라도 방역규제조치는 부분적으로 완화조치(다만, 축산분뇨는 사용을 금지, 매몰하거나 소독후 폐기)
- 가축의 재입식은 호주, EU 등의 관례를 적용, 일정기간(살처분완료30일 + 시험입식2개월) 경과후 입식허용

○ 예방접종 전두수 조기실시를 위한 행정조치

- 예방접종 미접종 가축은 정부 수매에서 제외하고 도축도 제한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가축의 소유자에게 예방주사 실시를 명령하고 거부시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
- 예방접종 미실시로 향후 규제역에 감염되어 살처분을 하게 될 경우 살처분 보상금 차등지급 검토
- 구제역 예방접종 가축의 특별관리 방안(시안)
 - 특별 관리대상 : 예방접종을 실시한 보호지역(발생농장 반경10km)의 우제류 가축
 - 예방접종 실시 : 1차 접종은 우제류 가축 전체

강제 실시하고, 2차접종은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의거 우제류 가축 모두 실시

* 예방접종 프로그램 : 최초 접종후 1~2개월에 보강접종하고, 그후 4~6개월마다 계속 추가 접종, 예방접종을 한 어미에서 생산된 새끼는 모체이행항체를 갖게 되므로 2~3개월경에 1차접종 한후 3~4주 후에 보강접종 실시

- 예방접종 가축의 표시 : 종축, 한우암소, 젖소, 모돈, 사슴 등 장기간 사육되는 가축은 축종에 따라 지명을 표시하는 약어를 이표에 표기하

거나 문신표시하고 비육우, 육성돈 등 단기간 단기간 비육후 도축장에 출하되는 가축은 가축방역관이 예방접종증명서 교부(단, 돼지는 능장의 돈군별로 발급)

- 사후관리

- 관리대장 작성 및 비치
- 예방접종 가축의 관리 : 주기적 임상검사와 이상가축 또는 의심가축에 대해 항원·항체 검사를 실시하고, 해당가축의 타지역 이동시 예방접종지역 시장, 군수는 관할 시·군(도축출하 : 관할방역기관)에 통보함

〈경계지역의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된 보호지역의 경우〉

구 분	방역규제 조정 내역
① 예방접종가축	지정도축장 출하허용 ·
② 원유	발생농장 반경 3km이내 고온멸균 처리후 유통
③ 도축부산물	소독·폐기, 랜더링시설에서 열처리 후 폐기 또는 재활용, 도축장안에서 심부온도 70℃로 30분 이상 열처리후 식용유통(냉장처리된 정육만 유통)
④ 축산분뇨	농장밖 반출금지. 다만, 축분발효비료 완제품·소독처리된 액비는 유통허용하고 완전발효된 액비나 액상분뇨(슬러리)는 지역내 살포허용, 지역내 공동처리시설로 운송시도 반출허용
⑤ 배합사료	농장밖 반출금지, 농장내 자체 소진
⑥ 건초·벗짚	국내산은 자체소진, 중국산은 역학조사위원회의 논의결과에 따라 사용여부 결정
⑦ 음식물쓰레기	소독처리후 반출 또는 지역내 매몰
⑧ 인공수정	지역내 생산금지, 타지역 정액도 사용자제
⑨ 사료공장·차량	세척·소독후 운행
⑩ 우유공장·차량	세척·소독후 운행
⑪ 가축수송차량	지정도축장외 우제류 차량은 통행금지
⑫ 종축장 새끼	농장밖 이동금지. 단, 공인기관에 등록된 순종돈, 원종돈에 한하여 예방접종을 받고 7일(소는 14일)후 항원검사 결과에 따라 이동 허용
⑬ 자연교배	금지
⑭ 가축시장	폐쇄조치 유지
⑮ 기타 사람·차량	소독후 통행허용

이동제한 해제지역에 대한 축산분뇨처리요령 및 방법

□ 축산분뇨처리 및 시설관리요령

- 분뇨처리시설(분뇨저장조, 퇴비사, 분뇨처리시설등)의 차량출입시 소독 철저
 - 바퀴가 충분히 담기도록 소독조 통과 및 차체 전체를 분무소독
- 축분발효시설 및 퇴비사
 - 최근에 발생된 분뇨부터 발효상에 특입처리하여 발효열에 의한 병원균 박멸
 - 바람에 의한 분진 비산 방지를 위하여 원치커튼 설치, 교반횟수최소화(1회/일이하)
 - 퇴비사의 고형축분 퇴적시 텁밥 혼입으로 발효열 생산 촉진
- 생물학적 정화처리
 - 빈번한 소독약제 사용에 의한 폭기조내 미생물 활력 저하 및 사멸 우려로 종균제특입증가
 - 처리시설의 내·외부 생석회 도포살포 소독 실시
 - 발생되는 슬러지 및 고액분리 고형물 퇴적시 텁밥 등 혼합하여 퇴적하므로 발효열 생산 촉진
- 액비 및 높오수 저장시설
 - 분뇨 이송(돈사→저장조, 저장조→처리시설) 시 차량이용 자제하고 자가펌프 또는 자연유하 방법을 이용

- 차량 이용후 차체전체를 가성소다등 유류소독제를 이용 살포 소독실시

※ 이동제한 해제지역은 오분법등 관련법에 의거 이동제한 조치 이전의 방법대로 축산분뇨를 처리할 것

□ 축산분뇨 처리방법

-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된 경계지역(10~20km)의 규제사항
 - 축분발효비료 : 유통허용
 - : 축분발효비료 완제품, 원료제품 등
 - 정화처리 방류수 : 『오분법』제9조제1항 별표1의 방류수수질기준과 pH 6.0이하 또는 11.0 이상을 준수하여 방류
 - 액상분뇨(슬러리등) : 완전부숙하여 pH 6.0 이하 또는 11.0 이상을 준수하여 농경지 살포
- 경계지역의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된 보호지역(10km이내)의 규제사항
 - 농장밖 반출금지 : 다만, 축분발효비료 완제품·소독처리된 액비는 유통허용하고 완전발효된 액비나 액상분뇨(슬러리)는 지역내 살포허용, 지역내 공동처리시설로 운송시도 반출 허용

□ 전염병발생 신고기관 전화번호

기관명	전화번호	기관명	전화번호
서울 보건환경연구원	02)570-3430~9	충북 축산위생연구소	043)220-5272
부산 보건환경연구원	051)331-0094	충남 보건환경연구원	045)631-3091
대구 보건환경연구원	053)764-0104	전북 축산진흥연구소	065)220-6500
인천 보건환경연구원	032)575-7738/9	전남 축산기술연구소	062)941-2577/8
광주 보건환경연구원	062)571-0498	경북 가축위생시험소	053)326-0011
대전 보건환경연구원	042)863-6295/6	경남 축산진흥연구소	059)753-5505/6
경기 축산위생연구소	033)294-6762	제주 축산진흥원	064)741-3554
강원 가축위생시험소	0361)243-9580~3		